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식시설물 실명제 및 불법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도입 등 〉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128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3
2. 불법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9
3. 양식업 질서 확립을 위한 명예감시원 도입	15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2.

3. 회 부 일 :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

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 2·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가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6조의2, 제8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수산물”이라 한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 ----- ----- ----- ----- -----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 ----- ----- ----- ----- -----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
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신 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
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

_____.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
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
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 시설물을 설치¹⁾할 수 있으나, 2025년 기준 무면허·무허가 양식시설물(이하 “불법 양식시설물”이라 함)의 비율이 김 양식시설물의 경우 39.7%, 전복 양식시설물의 경우 31.8%에 달하고 있으며, 불법 양식시설물은 해양환경 오염, 선박 진로의 차단 등으로 인한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양식품목 양식시설물 면허 및 불법 현황 >

구분 (2025년)	면허시설량 (A)	실제시설량 (B)	실제시설비율(%) (B/A)	불법 시설물 비율(%)
김	1,486,666책	1,182,490책	79.5	39.7
전복	1,786,823칸	1,073,569칸	60.1	31.8

자료 : 해양수산부(출처: 양식장 영상판독사업, KMI)

- 현행법²⁾은 양식업의 면허·허가 효력이 소멸 또는 양식시기가 종료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 양식업은 시·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되거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철거하도록 하고, 철거의무자가 철거의무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양식시설물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양식시설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철거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철거에 상당한 시일이 발생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양식시설물 지자체 단속 현황 >

구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충남	인천
2023	무면허(무허가)	-	3	73	-	-	-	-	1	-
	면적 초과	-	-	9	-	-	4	-	-	-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5	-	51	-	-	-	-	-	-
	기타	7	4	9	5	1	11	-	1	1
구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충남	인천
2024	무면허(무허가)	-	5	72	-	-	-	-	2	-
	면적 초과	-	-	-	-	-	-	-	-	-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1	-	18	-	-	-	-	-	-
	기타	11	2	2	5	2	9	1	1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충남	인천
2025. 1.~6.	무면허(무허가)	-	-	65	-	-	-	-	-	-
	면적 초과	-	-	-	-	-	-	-	-	-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	-	29	-	-	-	-	-	-
	기타	3	1	1	-	-	3	-	-	-

자료 : 해양수산부(출처: 지자체 조사/ 단위 : 건수)

*비고 : 기타에는 휴업신고 위반, 양식업 미개시, 양식장 관리선 관련 위반, 어장사이 거리 기준 위반, 양식시설물 미철거 위반, 임대차 금지 위반, 의무 어장청소 미 실시, 양식품종 외 양식, 가두리 관리자 화장실 미설치 등이 해당함

□ 개정안은 바닷속에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정비의 효과성을 높여 해양환경 오염 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유사 제도로써, 불법적으로 설치된 폐어구·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구실명제³⁾가 2023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어구 실명제 실시 현황 >

- (법적근거) 수산업법 제76조 (시행일 : 2023년 1월)
-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 어구에 표시
- (대상)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표시사항)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3)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부는 양식시설물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무분별한 불법양식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불법양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유사 제도인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실명제에 대한 벌칙⁴⁾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의 위반의 법익침해 정도가 어구실명제와 다른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홍보 및 제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할 필요⁵⁾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수산업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5)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불법어구 즉시철거제의 경우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함

2. 불법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 중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

	<u>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⁶⁾은 불법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자가 철거의무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양식시설물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법」⁷⁾을 따른 경우, 계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이상의 행정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히 양식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늦어질 수 있고, 해양에 설치

6)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 양식업은 시·도지사,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행정대집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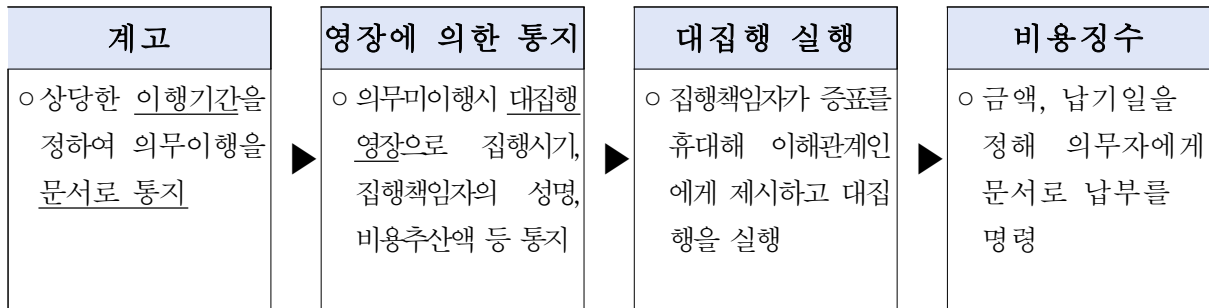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사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되는 양식시설물의 특성상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대집행법」의 계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행정대집행의 절차 >



□ 개정안은 양식업 종류별 면허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된 양식시설물 중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식시설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절차보다 단속시기를 단축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제도로써, 사용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어구·시설물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철거를 시행하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⁸⁾가 2026년 4월 실시 예정임.

8) 「수산업법」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현황 >

- (법적근거) 수산업법 제65조의2 (시행일 : 2026년 4월)
- (주요내용)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행
- (대상)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시설물 철거, 어구 사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 철거,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

- ☐ 해양수산부는 현행 제도상 불법 양식시설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불법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이행절차에 장기간(2개월이상) 소요되어 정비 효과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과 함께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양식업 종류별 면허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는 것이 현행법 및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대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요건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용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유사입법례⁹⁾를 참고하여 안 제56조의3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둘째,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수산업법」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10) 해양수산부는 유사입법례인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에 관한 유사입법례 >

법률	조문 내용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u>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u>
하천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u>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u>
수산업법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u>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u>

셋째, 현행법은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대집행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을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와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허가양식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6조의2의 양식시설물 실명제에도 양식업권자와 허가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 제56조의3제1항에 별도의 호를 신설하여 허가양식업자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11)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에서 불법으로 양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특례를 양식업 허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양식업 질서 확립을 위한 명예감시원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려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행정관청 외의 민간에서도 공정한 양식업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명예감시원 제도 주요 현황 >

근거규정	명예감시원 명칭 및 기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축산물 위생관리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양곡관리법	명예감시원 :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소금산업 진흥법	명예감시원 :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명예감시원 : 낙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감시·지도·계몽
해양환경관리법	명예해양환경감시원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수산직불제법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 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감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가 관여하는 경우는 ‘유통질서’나 ‘검역·방역’ 등의 사항에 대한 것인바, 개정안의 ‘양식업 질서’는 그 내용을 실제에 맞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행위

이므로 개정안의 “감시·지도”는 “지도·계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9

구분	유사 제도	
1 양식시설물 실명제	어구 실명제	▶ (법적근거) 수산업법 제76조 ▶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 어구에 표시 ▶ (대상)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표시사항)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허가 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2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 철거제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 (법적근거) 수산업법 제65조의2 ▶ (주요내용)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행 ▶ (대상)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시설물 철거, 어구 사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 철거,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
3 불법행위 감시	명예감시원	▶ (법적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 ▶ (주요내용)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질서 감시·지도·계몽

□ 개정 사유

- 현행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한 불법어구 철거는 이행절차의 장기간 소요(2개월 이상), 소유자 불분명, 인력·장비부족 등으로 실행에 한계
 - * (현행)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법 적용 → (신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마련
-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관리 책임 강화, 유실어구 발생시 신고제도 마련 및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규제 완화
 - * (신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 주요 내용

-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 무허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의 신속한 철거를 위한 **특례제도*** 마련
 - * (내용)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
 - * (절차) ①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반환 또는 → ④ 1개월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 (어구관리기록 의무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대하여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 비치 및 어구 적재·설치·유실·폐기장소 기록·관리·점검**
 - * 자망, 통발, 안강망 등 어구의 사용량·유실량이 많은 어업에 적용
 - ** 행정관청 및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 지도·점검 / 위반시 과태료(백만원 이하)
- (유실어구 신고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신고
 - * (예시) 통발(10개 이상), 자망(20미터 이상) 등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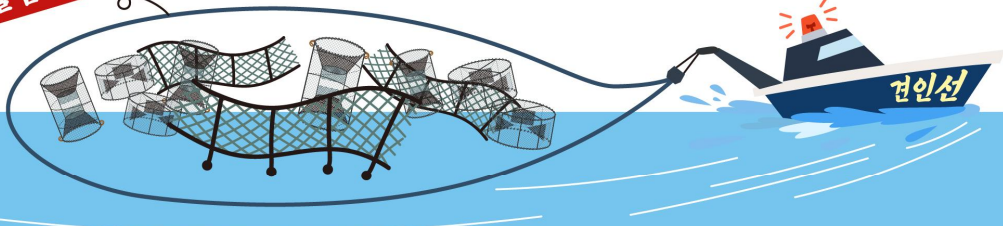
□ 제도 시행

- 행정대집행법 특례 적용,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공포 후 1년)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공포 후 3개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불법어구



목 적

수산자원보호, 해양오염방지, 어업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대 상

사용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불법 어구·시설물

- 무허가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40조)
- 어구 사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60조제1항)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7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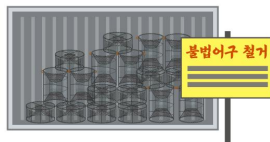
시행 내용·절차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① 불법 어구 발견



② 철거 후 보관 공고
(열람부 작성)



③ 소유자
반환 · 벌금 부과



④ 1개월 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시행주체

행정관청(해양수산부, 지자체)

제도 시행

2026년 4월